

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17-39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7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제2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『구립 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(합정동 443-6) 매입 계획』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,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함.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합정동 443-6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설치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.

3. 사업의 필요성

- 서울시의 「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」 및 구청장 공약 사항인 「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」에 의거 우리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
- 금년도의 경우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 적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(도토리어린이집)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전환 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.
-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시비보조사업 (시비 95%, 구비 5%)으로 적은 구 예산 투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
-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2014년에 준공된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면공사가 필요 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 운영이 가능함.

4. 공유재산 취득현황

-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

소재지	규모	대지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공시지가 (천원/㎡)	지목	사용현황	용도지역	준공일
희우정로 53-6 (합정동 443-6)	지상4층 /지하1층	233.4	495.74	3,159	대	어린이집	제2종일반 주거지역	'14.2.20.

- 어린이집 운영현황

시설명	유형	대표자/원장	정원/현원 (명)	보육교직원 (명)	인가일	비고
도토리 어린이집	민간	정수현 (개인)	99/95	15	'95. 5. 9.	시간연장형

- 기준가격

[단위 : 원]

구분	소재지 (행정동)	개별공시지가 (원/㎡)	대지면적 (㎡)	소계	비고
토지	희우정로 53-6 (합정동)	3,159,000	233.4	737,310,600	시가표준액
건물				429,725,968	
계				1,167,036,568	

※ 건물 : 개별주택가격 미공시에 따른 시가표준액 확인(세무1과-2903, '17. 3. 7.)

5. 그간 추진경위

- 2016. 10. 11. :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 제출(도토리어린이집)
- 2016. 10. 14. : 제6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
- 2016. 11. 03. : 제6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개최
- 2016. 11. 11. : 제6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(승인)
- 2017. 03. 22. : 제1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(재산취득 적정여부)
- 2017. 03. 31. : 제1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
- 2017. 04. 05. : 제1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통보(승인)

6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- 2016년 서울시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(지원금액)

[단위 : 백만원]

시설명	재원별			용도별			
	계	시비	구비	계	매입비	리모델링비	기자재비
도토리 어린이집	2,520	2,394	126	2,520	2,500	10	10

※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: 시비매칭사업(서울시 95% : 마포구 5%)

- 국고보조금 : 4월 신청완료(최대 327백만원 확보 가능)
- 시비보조금 : 5월중 시비보조금 신청 예정
- 구비 :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(126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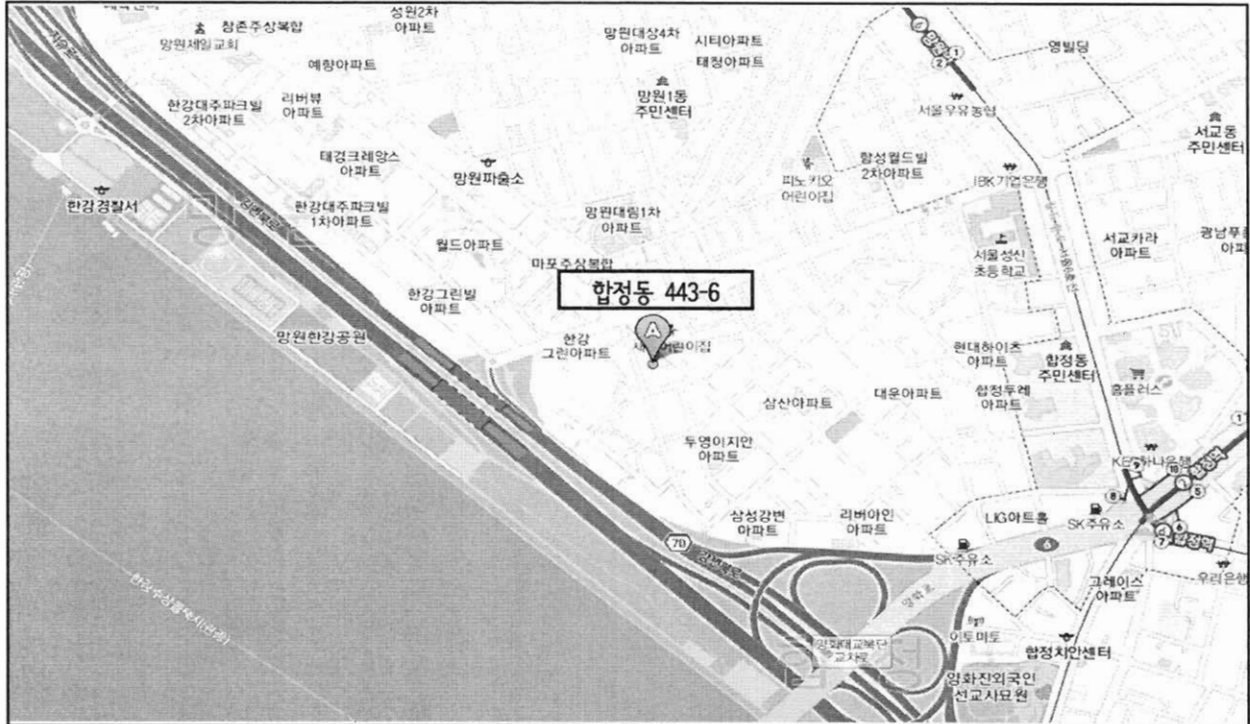
7. 법적 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18조(구립어린이집의 설치)

8. 향후 추진계획

- 보육정책위원회 개최(신규위탁체 선정) 2017. 5.
-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계약 체결 2017. 5.~6.
- 리모델링 공사 시행 등 개원준비 2017. 7.~8.
- 구립어린이집 전환 개원 2017. 9. 1.(예정)

위 치 도



위치도 설명

도토리어린이집

현 장 사 진



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11-1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	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
취	계	토 지	1	1	737,311				1	1	737,311	
		건 물	1	1	429,726				1	1	429,726	
	기 타											
득	1. 매 입	토 지	1	1	737,311				1	1	737,311	
		건 물	1	1	429,726				1	1	429,726	
		기 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처	계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기 타											
	4. 매 각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분	5. 양 여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
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대	합정동 443-6	1 (대지면적:233.4m ²) (연면적:495.74m ²)	1,167,037	2017. 8월	구립어린이집 설치	매입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